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대표발의 : 임희도 의원)

의안 번호	2697
----------	------

발의연월일 : 2023. 07. .

발 의 자 : 임희도·정병용 의원

1. 수정이유

- 기업투자유치·지원위원회 위촉직 위원의 연임 및 해촉 에 관한 사항을 「하남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수정
- 다소 문맥이 맞지 않는 조항을 명확하게 규정
- 기업유치센터의 구성에 대한 사항을 명시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조례안 제28조 위촉직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수정 (안 제28조)
- 조례안 제30조 위원의 해촉에 관한 사항을 추가로 명시 (안 제30조)
- 조례안 제35조 기업유치센터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안 제35조)
- 조례안 제37조의2 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신설(안 제37조의2)

3. 수정조례안 : 덧붙임

4. 수정안 조문 대비표 : 덧붙임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하남시 기업 투자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4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투자기업으로 선정받고자 하는 기업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거주민 고용 계획 및 고용 창출효과, 투자실행 가능성, 재무상태 등에 대한 종합사업계획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 중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3조제2항,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을 “기업활동 지원에 대하여 「하남시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으로, “국내기업”을 “기업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하여는 「외국인투자촉진법」 제3조제2항에 따라 국내기업”으로 한다.

제28조 중 “연임”을 “한 차례만 연임”으로 한다.

제30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제3호 중 “질병 등”을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여행 등”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제4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4호 및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에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그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한 경우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거나 위원회 위원직을 유지하기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비위 사실이 발생한 경우

② 시장이 제1항 각 호에 의거 위원을 해촉하는 경우 그 사유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35조 전단 중 “있다”를 “있으며, 기업유치센터는 센터장과 직원(출자·출연 기관 및 공기업 포함)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로 하고, 같은 조 후단을 삭제한다.

제3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7조의2(보조금 지원기업의 의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제4조제2항의 종합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내 고용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여야 한다.

『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원안과 같음』

칙으로 정한다.

<신 설>

포함)으로 구성하고 센터장은
업무담당과장으로 한다. <후단
삭제>

제37조의2(보조금 지원기업의 의
무) 보조금을 지원 받은 기업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보조금
신청시 제출한 제4조제2항의 중
합사업계획서에 따라 관내 고용
인원의 채용을 완료하여야 하
며, 보조금 지급일로부터 3년
이내에 보조금의 정산을 신청하
여야 한다.